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0. 13. /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25. 10. 14.
- 다. 상정일자: 제2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10.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안 제4조)
-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 7조~제8조)
- 비용지원 및 기관 협력,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가. 제정 목적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제정안의 목적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있음.
- 2023년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친화도시 제도가 신설된 이후, 현재 관악구·부산진구·거창군이 지정되어 5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관악구는 청년 인구 비중이 높고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마포구는 청년 인구 비중이 33.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위에 해당하나, 최근 청년일자리과가 고용협력과로 통합되는 등 전담조직 축소로 정책 추진 기반이 다소 약화¹⁾된 상황임.
- 한편, 서울시는 2023년 7월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진구·성북구·강북구·은평구·금천구·관악구·성동구·도봉구·동대문구·영등포구 등 11개 자치구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임.

1) 이에 대해 채우진 의원은 제276회 정례회(2025.6.2.) 5분 발언에서 “마포구는 아동·여성·고령친화도시 지정되어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나, 청년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활용해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마포구 역시 상위법령과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의 중장기적 추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내용

- 본칙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목적·정의, ▲책무·원칙, ▲계획 체계, ▲위원회, ▲ 연구·지원·협력·홍보의 구조로 체계화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조번호/조제목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권익증진 도모
제2조(정의)	“청년”, “청년정책”, “청년친화도시” 정의를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및 상위법과 연계
제3조(책무)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 발굴·추진 의무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청년참여 촉진, 평등한 기회 제공, 자질 향상 등 기본원칙 명시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위원회의 설치)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청년정책위원회」로 대체 가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기능, 심의의결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	친화도시조성 추진에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관련 행정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력
제12조(교육 및 홍보)	청년친화도시 홍보 및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청년”, “청년정책”, “청년친화도시”의 정의를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및 상위법과 연계하여 정립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확보함.

(2) 구청장의 책무 및 조성 원칙 명시(안 제3조~제4조)

-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수립 시 청년 의견을 청취할 책무를 가짐.
- 교육·고용·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조성 원칙으로 함.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제6조)

-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청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 기존 「청년 기본 조례」가 개별사업 중심의 조례인 데 반해, 본 조례안은 도시단위의 종합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구조로, 정책 간 연계성과 일관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중복 연구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4)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제8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함.
- 다만, 기존 「마포구 청년정책위원회」가 이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되, 실질적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연구·지원·협력·홍보 등(안 제9조~제12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정책 실행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반을 강화함.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위임 근거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및 계획체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도시 단위에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일관성·체계성 강화,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는 기존 「청년정책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정책 심의 및 자문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운영 성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정책 중복 및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참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마포구의 지역 여건에 부합하며, 향후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국·시비 매칭 등 외부 재원 확보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지정 계획 보고

고용협력과 고용협력과장: 양경수☎3153-8590 청년지원팀장: 신서경☎8641 담당: 윤홍주☎8642

□ 청년친화도시 사업개요

- 목 적: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타지역 확산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 지정규모: 특별자치시·도, 시·군·자치구(총 228개) 중 매년 3개 지역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2024년 선정 도시 :관악구, 부산진구, 거창군
-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 → 광역자치단체별 최대 3개 추천 → 서면·현장평가 → 국무총리 지정
- 평가기준: 청년정책과 관련된 추진기반 및 조직·인력, 실적·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 재정지원 : 지자체별 첫 2년간, 연 2.5억원 씩 총 5억원(국비)
 - ※ 국비·지방비는 5:5 매칭이 필수이며, 지방비는 광역:기초 5:5 매칭원칙
 - 행정지원 : 맞춤형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 추진 일정

- 2025.9.5. :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 2025.9.8.~12 : 컨설팅운영
- 2025.10.15. : 신청서류제출
- 2025.11. : 청년친화도시 후보 평가
- 2025.12. : 청년친화도시 선정

□ 조례 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 2023. 7.
- 자치구 현황: 11개구 제정 완료

연번	기관명	제정시기	비고
1	광진구	2025. 2.	
2	성북구	2024. 7.	
3	강북구	2025. 5.	
4	노원구	2024. 11.	
5	은평구	2025. 3.	
6	금천구	2025. 1.	
7	관악구	2024. 11.	'25년 청년친화도시 선정
8	성동구	2025. 9.	
9	도봉구	2025. 8.	
10	동대문구	2025. 8.	
11	영등포구	2025. 7.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